

4. 입목 소유권

❖ 조림목소유권확인 청구

별지 2 내지 9목록 기재의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산림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산림의 반환의 의미

산림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목죽이 대부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.(대법원 1978.7.11. 선고 78다768 판결)

[참조판례]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'대부산림의 반환'의 의미

구 산림법(1990.1.13.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,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, 죽이 차수인

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.(대법원 1995.1.24. 선고 94다 25360 판결)

[참조판례]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물적 및 시적 범위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판결에서 갑의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 실재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던 할지라도 그 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갑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으로서의 위와 같은 갑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.(대법원 1987.8.18. 선고 87다카527 판결)

☐ 입목소유권확인 청구

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산 1-2 임야 25,000㎡ 지상 입목 중 소인으로 정원형(○)을 표시한 소나무 20본을 제외한 나머지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일정한 수량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그 명인방법이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

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한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일정한 수량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성이 없다고 판시한 환송전 원심판시가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위 망인과 원고의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특정된 입목에 대하여 구체성이 있으므로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지 아니하다는 판단부분에 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그 명인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입목의 기지인 임야를 그 지상입목과 함께 매수할 때에는 게시판이 멸실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본심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관한 하급심에 법률상 기속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.(대법원 1976.12.28. 선고 76다2557 판결)

[참조판례] ① 입목의 명인방법

입목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그 내용이 특정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 표시가 제3자에게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② 명인방법의 성질 및 내용

명인방법은 그 목적, 성질, 필요성에 비추어 내용이 특정 구체화되어 제3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인방법의 존재여부는 등기에 의한 공시방법과 충돌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.(서울고법 1976.9.30. 선고 76나1599 판결)

☐ 입목소유권확인 청구

피고는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1기재 입목, 위 같은 리 498-6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2기재 입목, 위 같은 리 4987-6 하천과 위 같은 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45, 47입목, 위 같은 리 산12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45, 53 입목, 위 같은리 산12 임야와 위 같은 리 13 잡종지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54 입목, 위 같은 리 13 잡종지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52 입목, 위 같은 리 13 잡종지와 위 같은 리 14 전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60 입목, 위 같은 리 14 전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59 입목, 위 같은 리 14 전과 위 같은 리 497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61, 62 입목, 위 같은 리 497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71, 74, 75, 76 입목, 위 같은 리 497 도로와 위 같은 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표시의 별지 목록 제3기재 77 입목, 위 같은 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2표시의 별지 목록 제4기재 입목, 위 같은 리 498 하천과 위 같은 리 499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2표시의 별지 목록 제5기재 입목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타인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귀속

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.(광주고법 1984.11.30. 선고 84나112 판결)

☐ 입목소유권확인 청구

피고는 경기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12-1 잡종지 4,501㎡, 같은 번지의 2 잡종지 3,309㎡, 같은 번지의 3 잡종지 2,804㎡, 같은 리 239-1 잡종지 4,978㎡ 지상에 생립한 이태리 포푸라 입목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

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,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

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,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입목소유권을 다룰 수 없다.(대법원 1989.10.13. 선고 89다카9064 판결)

㊦ 입목소유권확인 청구

피고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1호 임야 상의 입목 및 2호의 송원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
[별 지]

물 건 목 록

1호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산 127 임야 300,000㎡.

2호 위 지상에서 벌채하여 위 지상에 놓여 있는

송원목	6척	5,037본	10,074재
"	9척	2,696본	21,568재
"	12척	1,993본	49,825재
합 계		9,626본	81,467재

이 상

[참조판례] 피고가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이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

피고가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.(대법원 1975.5.27. 선고 75다573 판결)

[참조판례]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인방법을 한 경우 물건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

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명인방법은 물건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.(대법원 1975.11.25. 선고 73다1323 판결)